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m ³	m ³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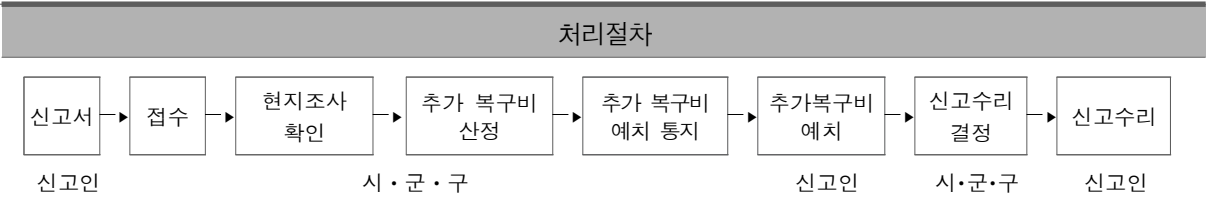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첨부서류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없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 <2021. 5. 26.>	
	6. 삭제 <2021. 5. 26.>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